

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1995. 12. 12
- 나. 제 안 자 : 부천시장
- 다. 회부일자 : 1995. 12. 19
- 라. 상정일자 : 1995. 12. 20

2. 제안설명요지

가. 제안이유

- 부천시청검도선수단설치조례, 부천시청육상선수단설치조례, 부천시청탁구선수단설치조례 등 3개의 조례가 독립적으로 있는 것을 탁구선수단설치조례는 폐지하고 검도 및 육상선수단설치조례를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로 통합

나. 주요골자

○ 목 적(안 제1조)

부천시청검도선수단설치조례, 부천시청육상선수단설치조례를 통합하고, 부천시청탁구선수단설치조례를 폐지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사항 규정

○ 설치종목(안 제2조)

육상선수단, 검도선수단

○ 구 성(안 제3조)

- 단장(총무국장), 단원(감독, 코우치, 선수)
-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
- 선수단에 관한 인사관리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없	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요지

○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8. 체계적 심사내용

○ 없음

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안

의안 번호	52
의결 년월일	95. 12. 20 (제 4 차)

제출년월일 : 95. 12. 12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☐ 제안이유

부천시청검도선수단설치조례, 부천시청육상선수단설치조례, 부천시청탁구선수단설치조례 등 3개의 조례가 독립적으로 있는 것을 탁구선수단설치조례는 폐지하고 검도 및 육상선수단설치조례를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로 통합

□ 주요골자

○ 목 적(안 제1조)

부천시청검도선수단설치조례, 부천시청육상선수단설치조례를 통합하고, 부천시청탁구선수단설치조례를 폐지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사항 규정

○ 설치종목(안 제2조)

육상선수단, 검도선수단

○ 구 성(안 제3조)

- 단장(총무국장), 단원(감독, 코우치, 선수)
-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
- 선수단에 관한 인사관리.

○ 직 무

- 단 장 : 단무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, 감독
- 감 독 : 단원의 지휘 · 감독 및 단무처리
- 코우치 : 감독보좌 및 감독유고시 직무대행

○ 겸직금지 :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겸직 금지

○ 훈 련

- 합숙훈련 : 연간 300일
- 비합숙훈련 :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

○ 선수장려금

전국규모대회등의 입상자 및 입상자의 지도자에게 지급

○ 부 칙(폐지조례)

- 부천시청육상선수단설치조례
- 부천시청검도선수단설치조례
- 부천시청탁구선수단설치조례

○ 개정내용

- 훈련일수 240일~300일
- 탁구선수단 설치조례 폐지 사유

—부천시청 탁구선수단 설치조례 제정(92. 12. 21 조례 제1206) 당시 93. 2월 시온고등학교

- 졸업생을 영입하여 창단하고자 하였으나, 대학 및 대기업으로 진로가 확정되어 영입이 불가하였고, 또한 선수들 자신도 관공서팀 입단은 기피하는 실정이었음
- 팀 창단을 위해 계속 추진하였으나, 우수선수 영입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고 3~4류급의 선수들을 영입하여 창단해도 팀성적은 물론 부천시의 명예를 선양하는데는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어 부천시청 탁구선수단 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며,
- 향후 관내에서 배출되는 타종목의 선수(예:투기종목등)중 우수하고 유망한 선수(약간명)를 확보하여 창단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, 이에 따른 선수단을 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에 설치하고자 함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조례안

- 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2 조(설치종목)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에는 육상선수단·검도선수단(이하 “선수단”이라 한다)을 둔다.
- 제 3 조(구성) ①선수단은 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.
- ②단장은 총무국장이 되며, 단원은 감독, 코우치, 선수로 구성한다.
- 제 4 조(임용권자) ①단원은 시장이 임용한다.
- ②단원의 임용은 발령과 임용장의 교부로써 행한다.
- 제 5 조(인사위원회) 선수단에 관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부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- 제 6 조(단장의 직무) ①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·감독한다.
- ②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·감독하고 단무를 처리한다.
- ③코우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 7 조(임용자격) ①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.
- ②단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사전에 신원조치를 할하여야 한다.

제 8 조(겸직금지) ①단원은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

②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한다.

제 9 조(훈련) 단원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합숙 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

1. 합숙훈련은 연간 300일로 한다.
2. 비합숙훈련은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할 수 있다.
3. 단원의 훈련장소는 감독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10 조(대회출전) 각종대회에 출전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11 조(보수)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한다.

제 12 조(실비보상)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.

제 13 조(선수장려금) 전국규모대회 등의 입상자 및 입상자의 지도자(감독·코우치)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 14 조(신분 및 권익보장) 시장은 단원의 신분 및 권익보장을 위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.

제 15 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임용된 단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.

③(폐지조례)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청육상선수단설치조례, 부천시청검도선수단설치조례, 부천시청탁구선수단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